

행 정 자 치 부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이행 보증방법 변경 승인 검토 소홀

기 관 명 경기도

관 계 기 관 경기도 본청, 양평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15이상 내는 방법¹⁹⁾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²⁰⁾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는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회계제도과-114, 2010. 1. 18.)한 바 있다.

19)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액을 납부하는 방법

20) 계약보증금 계약불이행에 대한 금전보상 성격이 우선되는 반면 공사이행보증은 준공책임이 우선되는 보증제도로 원도급사에서 공사이행을 못할 경우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가 보증시공을 하도록 하는 방법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방법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공사의 이행 정도,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 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방법 변경 승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이 타당하며

특히, 계약상대자가 부도,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보증 방법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당초 계약이행보증 방법을 변경 승인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관련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 ○○○○와 양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건설업 등록 말소 및 부도, 경영 악화 등으로 계약 이행을 어려운 상태임에도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가” 6호²¹⁾에 따른 계약해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 ○○○○공사 등 3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각종 체불금 민원 해결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사이행보증으로 변경 승인²²⁾하였다.

결과적으로 원도급자가 계약이행을 지속하지 않아 이행보증사로 하여금 보증시공이 이루어졌음에도 계약이행보증방법 변경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거나 소홀히 함에 따라²³⁾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21)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을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됨

22) 발주기관에서는 원도급사의 부도, 건설업 말소 및 채권 압류 등에 따른 체불임금 발생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민원해결의 어려움, 시공사 재선정에 따른 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계약보증방법을 계약보증금에서 공사이행보증 방법으로 변경

23) 경기도 ○○○○의 ‘○○○○○○○○○○ ○○○ ○○○공사’, 양평군의 ‘○○○ ○○○ ○○사업’의 경우 원도급사의 계약이행보증방법 변경요청에 대해 장단점 분석 등 검토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음.

조치할 사항 경기도지사, 양평군수는

앞으로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방법 변경 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이행 정도,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 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